

【참고 2】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

< 목 적 >

국내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및 보강하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국산 목재 생산효율성 증대를 통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①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년간
- 사업규모 : 총 6개소
 - 개소당 지원 단가 : 최대 2억원(국비 80, 지방비 40, 자부담 80백만원)
 - ※ 보조금은 2억원 범위내에서 설치대상 기계장비가격을 평가하여 지원
-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 480백만원)
- 실행주체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신청자격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 가능해야 함
- 선정방법 :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산림청 주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접수 하여 시·도를 통해 산림청에 제출
- * [붙임2] 심사평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② 사업 내용 및 범위

- 사업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락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 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이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 (기타) 원목 집재를 위한 기계장비 등

○ 사업범위

- 인건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
- 가동률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

③ 제출 서류

- 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 ②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④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⑤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 ⑥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세금계산서 등) 1부.
- ⑦ 일반현황 1부.
- ⑧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량, 소요예산, 원가구성 현황, 사업추진 효과, 사업추진 일정 등
- ⑨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급, 해당자에 한함) 1부.
- ⑩ KS 제품인증서, 목재제품 신기술지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심사기준

- 심사방법 : 평가표에 의거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 기준 : 심사 평가표(붙임 2)에 따라 심사
 -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25), 원료 및 자금 운영계획(30), 평가자 종합 평가(5)
 - 가점사항 : 수출 기여도, KS 제품인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등

- 중복지원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하나 국산 목재를 취급하는 업체에 한하여 중복 지원 가능(단, 지원받은 연도 기준 5년 경과한 경우)
- 동일사업에 대하여 관계인(주주, 이사 등)이 과거 국가 보조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선정자 발표 : 공문으로 통보

⑤ 보조사업 사업수행자 및 보조금 결정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 (사례) 원가계산용역비는 용역기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총사업비의 0.2~1.0% 해당)으로 용역기간은 14일에서 30일 소요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⑥ 사업의 착수 및 1차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 제출

⑦ 1차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⑧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낙찰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개소 당 보조금(국비 80백만원, 지방비 40백만원) 지원 가능

⑨ 준공 및 최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기계장비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
 - 기계장비 부설시공 등으로 정해진 사업 기간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및 사유서 제출

-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 최종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이 결정된 금액에서 1차 교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하여야 함

10 자부담 및 자치단체보조금 집행기준

□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이 집행 완료된 후 자치단체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계약금과 준공금으로 기계장비 제조사 등록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보조사업자는 기계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업체에 지급
 - 준공금은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완료 후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 “설치 완료 후”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어 지자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계약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
- 자부담은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현금 직접지급은 불가)

□ 자치단체보조금 집행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 결정액의 50%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 * 자치단체보조금의 지급비율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
- 최종 자치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 결정액에서 1차 교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집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11 보조금액 확정 정산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완료
 -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사업결과 보고

12 보조금의 반환

☐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후 잔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함

13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착수·준공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7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국고지원율에 대해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기계장비 이전 또는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 ‘보조사업자 의무’ 및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14 보조사업자의 자격 및 의무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및 관리 방안 등을 제출할 것
- 모든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준공 등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전까지 기계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 설치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는 보조사업자의 소유이어야 함
다만,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산림청·지방산림청·지자체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확인·견학을 하거나, 국립산림과학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성능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설치한 기계설비는 7년간 지자체의 허가 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기계설비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기계설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됨

-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업체는 선량한 책임을 다하여 기계장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업체의 고의·과실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 전과 설치후의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설치전 : 최근 1년간 기계가동 실적】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설치후 : 향후 3년간 가동실적(분기별 현황)】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 이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5 사후관리(보조사업자,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단, 기계장비의 금액 변동없는 규격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 기계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함.
- 지자체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산림청에 보고

[illegible]

<붙임 2>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계	100					
1. 사업수행 역량	15					
1)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	15					
2.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	25					
1) 제조시설 가동실적 * 최근 2년간 평균 가동실적 * 가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평균 가동시간으로 환산	15	9	11	13	15	
		2,000시간 미만/년	2,200시간 미만/년	2,500시간 미만/년	2,500시간 이상/년	
		* 1년 미만인 경우				
		120시간 미만/월	160시간 미만/월	180시간 미만/월	208시간 이상/월	
2) 가동을 향상 및 효율개선 노력도(정성평가)	10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25					
1) 원가 절감률(정량평가) -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되, 계획서의 타당성 부족 시는 평가자 주관에 따라 판단	15	3	6	9	12	15
		3% 미만	5% 미만	7% 미만	10% 미만	10% 이상
2)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정성평가)	10					
4. 원료 및 자금 운영 계획	30					
1) 국산원료 수급의 적정성 - 원료 구매 계획, 비축기간, 비축방법 등	20					
2) 자금 운용의 적정성 - 제조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보유자금 확보 여부 등	10					
5. 평가자 종합평가(종합검토의견)	5					
(가점)	11					
1) (수출기여도)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수출실적	5	1	2	3	4	5
		2만\$ 미만/년	5만\$ 미만/년	8만\$ 미만/년	10만\$ 미만/년	10만\$ 이상/년
2) KS 제품인증	3					
3)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3					
4) 건조설비 분야 교체	2					

* 수출기여도, KS 인증, 신기술 지정은 가산점 항목으로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

** 사업계획 중 건조설비 분야 제출 시 가점 부여. 단,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건조 외 타 설비로 변경 불가

*** 총점이 70점 이하인 경우 당연 탈락 처리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기계장비 매매계약서

계 약 당사자	매수인	(주) 〇 〇 〇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매도인	(주) 〇 〇 〇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각금액	총 액	총액의 70%			총액의 30%
			계약금 (자부담금의 50%)	준공금 (자부담금의 5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금 계좌 (지자체 등록 계좌)						
첨부서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품질보증서(3년) ④ 기계장비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기계장비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금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시설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금(원)을 매도인이 지자체에 등록한 계좌()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서명)

② 매수인은 ()까지 준공금(원)을 매도인이 지자체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준공금(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서명)

③ 매수인은 자치단체보조금(원)을 해당 지자체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자치단체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국고보조금(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④ “매수인”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자치단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자치단체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치단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기계장비의 결함 등으로 준공되지 않아 자치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기계장비 설치 및 사후관리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사업계획 변경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급한다.

o 계약후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기계장비 제작 공정률이 10%이상 30% 미만인 경우 : 총액의 10% 지급

o 계약후 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기계장비 제작 공정률이 30%이상 50% 미만인 경우 : 총액의 20% 지급

o 계약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기계장비 제작 공정률이 50%이상인 경우 : 총액의 30% 지급

③ 제2항의 단서조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또는 지급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7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기계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기계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기계장비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서명)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 및 등록기준

2024. 1. 1.



순 서

1.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기준	67
I. 목적	68
II. 지원기준	68
III. 대상자 선정 및 취소	69
IV. 계약 및 대금지급	71
V. 설치 및 사후관리	72
VI. 책임·의무사항	74
VII. 행정사항	75
[붙임] 1~3호 서식	76
2.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기준	81
I. 목적	82
II. 연소기 기본 요건	82
III. 등록 및 심의	82
IV. 등록제품 사후관리	84
V. 행정사항	86
[붙임] 1~4호 서식	87

1.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기준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 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연소기(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II. 지원기준

① 지원 개요

- 지원제품 : 산림청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
-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지원대상 : 목재펠릿 보일러 또는 난로를 설치를 희망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세대 또는 시설
 - 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②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 지원용도 :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주택용** : 「건축법」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 **임업·농업용** : 임업·농업용 건축시설(관리사) 및 재배시설
- **상업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주민편의용**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 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

- **사회복지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근로자복지시설(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등

* 제외대상 : 법인기업,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② 지원기준

0 지원범위 :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설치비용,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연료 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0 지원비율

- 주택용(임업·농업용·상업용 포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복지용(주민편의용 포함) : 국비 50%, 지방비 50%

0 지원한도액

① 보일러

-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② 난로 :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난로는 제품별 심의·등록 후 등록가격 및 지원한도액 결정 예정

③ 리프트 :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Ⅲ. 대상자 선정 및 취소

① 지원 대상자 선정

0 시·군별로 공모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자 접수 및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

- 접수는 실제 설치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함
- 사업량에 미달되거나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추가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시·군은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적합 여부를 결정

-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음

- ①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②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다시 지원 받는 경우
- ③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0 중복편중 지원여부¹⁾, 지원 제외대상여부²⁾ 등을 면밀하게 검토

- 1) **중복 편중 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연도 선정 제외,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 2) **제외대상 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또는 교부결정 취소 여부

② 선정 결과 공개

0 지원 대상자 확정 즉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공개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③ 선정 취소

0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
- ②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
- ③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사실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에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0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원 대상자는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에 향후 3년간 참여할 수 없음

IV. 계약 및 대금 지급

① 계약체결

-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지원 대상자는 표준계약서(붙임1)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함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 ③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 ④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운영 세부 사양서
 - ⑤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포함)
 -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 ⑦ 소비자 안내문 및 목재펠릿 구매처 정보
 - ⑧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표준계약서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내용 추가 가능
-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확인증을 배부하여야 함
 - 열효율, 연료 사용등급, 청소 부위 및 주기, 보일러(또는 난로) 불편 및 주의사항, 목재펠릿 구입처, A/S 연락처 등

② 대금납부 또는 청구

- 지원 대상자는 계약 직후 자부담금을 등록제품 공급업체가 산림청에 등록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제품 설치 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대금을 청구함
 - ①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공급계약서(사본)
 - ② 설치 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 ③ 대금청구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④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 ⑤ 소비자 안내 확인증

③ 대금 지급

- 시·군·구청 담당자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후 20일 이내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함
- *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9. 목재펠릿 보일러 시공기준, 단체표준(SPC-KFIC-A-001-2-83, 목재펠릿난방기)
-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2022.10.11.)을 따름

V. 설치 및 사후관리

① 기본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에 보일러·난로 설치를 완료 하여야 함
- 설치장소 주위가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
- 보일러·난로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② 설치 방법

- 옥내 설치 시
 -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함
 - 보일러실은 원활한 연소 및 환경 유지를 위해 급·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덕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제15조, 「건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름

0 옥외 설치 시(보일러)

-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를 하여야 함
- 노출된 절연재 또는 피복 부위 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함
- 보일러 외부에 있는 난방 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조치(보온 등)를 하여야 함

③ 이전 설치

0 설치 완료 후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당초 신청한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

- 변경 신고 접수한 시·군·구청 담당자는 설치장소 이전되는 시·군·구청에 변경사항 및 관련 자료를 이관
-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조금(지방비)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사업 이력 관리를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로 이관하여야 함

④ 제품 교환 및 환급

0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공급금액을 환급해야 함

-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②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 수리하였으나 3회째 동일 하자가 재발한 때
- ③ 제품의 수리 및 부품 교환 불가능할 때
- ④ 여러 부품의 고장으로 4회 수리하였으나, 5회째 고장이 재발한 때
- ⑤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0% 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0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하거나 배상책임이 있음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는 무상 수리
- 부품 의무 보유기간(10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함
 -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불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는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불 또는 제품 교환
 -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공급금액)의 5%를 가산하여 환불
 - * 감가상각한 잔여금 : 자부담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5.25.)”에 따름

VI. 책임·의무사항

① 설치·제조업체 책임사항

-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됨
 -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행위
 -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음
 - 설치, 대금 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 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

- 다만, 보일러 및 난로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점, 영업사원,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음

② 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 0 지원 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연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5년 (준공일 기준)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VII. 행정사항

- 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서식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현황을 익년 1월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목재펠릿 연소기 설치현황 서식(엑셀파일로 제출)

사군	일련 번호	설 치 현 황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작업체			
		용도	설치자	주소	연락처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사업비	사업 완료일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제품 규격 (kW)

- 0 시·군·구청 담당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공급업체에 요청하지 않도록 함
- 특히, 공급계약서를 제외한 제품 보증 및 세부 사양 등 관련 서류는 지원 대상자에게 배부토록 함

목재펠릿 보일러 · 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업명	목재펠릿 보일러 · 난로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 난로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 품목	☐ 보일러 ☐ 난로	
	업체명			제품가격		
	모델명					
	설치장소					
	사업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확인사항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임대인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 확인					

【붙임 2】

목재펠릿 연소기 공급계약서

계 약 당사자	소비자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 무 실				
		핸 드 폰				
	공급 업체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사 무 실					
	핸 드 폰					
A S						
계 약 내 용	품 목 명		보 일 러 또는 난 로		모 델 명	
	공급금액 (원)	총 액		계약금액(자부담금) * 총액의 30%		잔액(보조금) * 총액의 7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금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첨 부 서 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난로)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난로)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난로)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 안내문 및 목재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금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공급업체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판매하는 목재펠릿 연소기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소비자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원)을 공급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서명)

② 소비자는 잔액(원)을 해당 시·군에서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공급업체에게 위임한다.

* 소비자는 잔액(원)이 공급업체에 입금되는 것에 동의함(서명)

* 제2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시·군에서 직접 수령하여 공급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③ 소비자는 목재펠릿 연소기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서류를 공급업체에 제출해야 하며 소비자 귀책으로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업체에 지불하여야 한다.

* 소비자는 ○○시·군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공급업체는 계약한 연소기에 대하여 산림청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기준」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비자는 참관할 수 있다.

③ 연소기 설치 완료된 날부터 소비자는 연소기를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공급업체는 설치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 A/S와 유상 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소비자에게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공급업체와 소비자 상호 간에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소비자가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연소기(보일러·난로)를 설치하였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처분 제한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연소기(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소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소비자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함(서명)

* 공급업체는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함(서명)

제7조(소비자 안내) ① 공급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소비자 안내 확인증

1. 보일러(난로) 모델명 : *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
2. 열효율 : 80%
3. 목재펠릿 연료 등급 : A1
4.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고, 목재펠릿을 보일러·난로 연료공급 장치에 넣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5. 우리 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는 다음과 같이 청소해야 합니다.
 - 가. 청소장소 1 : 대상, 주기, 요령
 - 나. 청소장소 2 : 대상, 주기, 요령
 - 다. 청소장소 3 : 대상, 주기, 요령

+++ 난로를 옥내 설치한 경우 유의사항 +++

- 화격자는 펠릿 100kg 사용 후 최소 1회 청소, 난방기 가동 전 차가운 상태에서 청소
- 연료 이송장치 내부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하며, 난방기 전면부 및 배기덕트 등 고온부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두지 말 것
- 초기 점화 실패 시(불착화) 화상 및 화재 등을 주의하여 연소실 내부에 있는 잔여 목재펠릿을 제거한 후 난방기 재가동

6.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사용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 가. 000 할 때
 - 나. 000 할 때
 - 다. 000 할 때
7. 목재펠릿 보일러·난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지역 A/S 업체 : 000-000-0000, 본사 A/S담당 : 000-000-0000
8. A1 등급 목재펠릿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 A/S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목재펠릿 제조시설 및 대리점 현황은 별도 자료로 배부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주) 0000 (직인 또는 서명)

담당자 직위 및 이름 : (서명)

소비자 : (서명)

2.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기준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연소기(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의 등록 대상·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II. 연소기 기본 요건

1. 목재펠릿 보일러

-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 KS B 8901 인증)
- ② 열효율 : 80% 이상 (고위발열량 기준)
- ③ 300리터급 축열조 부착 가능 제품

2. 목재펠릿 난로

- ① 단체표준(SPS-KFIC-A-001-2082) 인증 제품
- ②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 요령」 제3조에 따라 KC 안전인증 취득 제품
- ③ 열효율 : 80% 이상 (고위발열량 기준)
- ④ 일산화탄소(CO) 가스 발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발생 시 경보기 알람 및 난방기 작동을 자동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확보

III. 등록 및 심의

① 등록 참여 자격

o 목재펠릿 보일러 또는 목재펠릿 난로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

* OEM, 수입업체는 참여 불가

② 제출서류

- ① 목재펠릿 보일러(또는 난로) 등록 신청서
- ②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중소기업유통센터 발행), 공장등록증, 건축물 대장, 생산시설 리스트, 시설 사진(전경, 근경)
- ③ KS 인증, 단체표준 인증, KC 안전 인증 중 해당 서류
- ④ 원가계산서
- ⑤ 기타 추가 서류는 <붙임 1> 서식 참고

【참고】 원가계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1.)에 따라 보일러 제조는 제조원가 계산방식을, 설치는 공사원가 계산방식을 따름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구성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

③ 기준가격 결정

- 산림청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별도로 실시한 원가계산용역 결과와 참여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결정
- * 산림청 용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 결정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재의뢰한 후 다시 가격 결정할 수 있음
- 보일러 또는 난로의 기준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가계산을 재 실시하여 가격 조정할 수 있음

④ 등록 심의

-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되 원가계산용역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심의
- (구성인원) 5명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

- (심의항목) 내구성, 사후관리계획, 품질개선 노력, 업체 견실성, 가격 적정성
- (심의방법) 위원회 서면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함
- (심의결과) 합격, 불합격, 조건부 합격으로 구분

- ①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반 서류 미제출한 경우에는 당연 탈락
- ② 가격 적정성 평가 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격 재협상 실시
- ③ 조건부 합격인 경우 조건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불 충족 시 불합격

o 등록 대상으로 합격한 제품은 공문 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5 계좌등록

- o 심의에 통과한 등록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 계좌를 등록해야 함
 - 1업체 1계좌 원칙이며, 계좌주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IV. 등록제품 사후관리

1 열효율 및 난방능력 개선명령

- o 품질보증기간 내에 열효율 기준 미달 또는 난방능력이 100% 미만으로 신고된 제품은 산림청장의 열효율 및 난방능력 개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제조업체는 전문기관에 열효율 또는 난방능력 시험을 의뢰해야 하며, 이때 KS 인증 또는 단체표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효율 저하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
- o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산림청장에게 결과 제출해야 하며, 기준 충족 후 보급할 수 있음
 - * 단 기술 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2 부품 개선명령

- o 등록제품의 부품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산림청장의 부품 개선명령에 따라야 함

- 보급실적 대비 동일한 하자신고건수가 3% 이상 발생 시 조치
- *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

0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③ 정기점검

0 설치·제조업체는 행정구역 리·동 단위 기준 5가구 이상 설치한 집단설치 마을의 요청에 따라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④ 자격정지

0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체의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음

- ① 제품 교환, 환불 요청, 개선명령(열효율, 난방능력, 부품)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단, 기술 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② 제품 교환, 환불, 개선명령(열효율, 난방능력, 부품)이 3회 이상인 경우
- ③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 하자보수(전화 또는 현장방문) 미 이행 시
- ④ 연료 무상지원, 자부담금 대납 등 불공정거래, A/S 센터 연락 불가(1일 이상)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
- ⑤ 보일러 및 난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⑥ 보일러 및 난로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⑤ 등록취소

0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심의 위원회의 심사 및 소명기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제품등록 취소

- ① 자격정지 후 제품 교환, 환불 요청, 개선명령(열효율, 난방능력, 부품) 등이 정지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등록제품

- ② 동일 제품의 교환 및 환급, 개선명령(열효율, 난방능력, 부품)이 5회 이상인 등록제품

나. 등록업체 자격 취소

- 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제품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제품을 설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 ②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한 경우
 - * 등록취소 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 ③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④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 가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미한 변경은 가능

【참고】등록취소 절차

- 문제 발생 → 조치요청(2회) → 최후통첩(1회) → 청문 또는 의견진술(최후통첩 후 7일 이내에 청문회 또는 공문을 통한 의견진술) → 등록취소
- 단, 나-①, ②,③ 항의 경우는 등록취소 절차 없이 즉시 취소 가능

⑥ 기타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제품에 문제 발생 시 열효율 및 부품 개선,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산림청(또는 위탁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 여부 결정

V. 행정사항

- 제품등록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 가능하며,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금지 요청
-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조업체는 보일러(난로) 목표수명을 20년으로 하고, 보일러 부품은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 주요 부품의 거래·판매처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산림청에 보고

【붙임1】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 신청서

업 체 명		제조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종목	
업체소재지			연락처
재무상태	자산	원 부채	원 자본 원
품목명		모델명	연소기목표수명 년
품질인증번호			시험검사기관
보급 희망가격 (제세비용 포함)	총 액 원	연소기 가격 원	축 열 조(해당시) 원
원가계산용역 기관 산출원가	원 *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원가계산 용역기관	원
열 효 율	고위발열량 %	연료소비량	kg/h
배기가스 온도차	℃	잔재중 미연소분	%
점 화 기	점화소요시간 분	정격전압	kW
연료 공급 장치 모터	제 조 사 최대출력 kW	모델명 정격전압	kW
청소장치	청소장치 부착 장소, 구동원리 등 간략히 기재		
상기 제품을 산림청 보급사업에 참여코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자 : (대표)(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유통센터 발행) 1부 ② 업체현황서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목록, 시설 사진-전경,근경,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③ 필수 인증 서류 (KS 인증, 단체 표준 인증, KC 안전인증) 각 1부 (해당되는 것) ④ 원가계산서 ⑤ 연소기 설계도서 ⑥ 연소기 설치·운영 요령 1부 ⑦ 연소기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보수 포함) ⑧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0%) 사본 1부. ⑨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⑩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⑪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⑫ 최근 3년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			

【참조 1】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유통센터 발행) 1부

업체현황서 1부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목록, 시설 사진-전경,근경, 사업자등록증
- 직원현황, 자격증 소지자 현황, 재무상태(자산·부채 현황) 증빙서류 각 1부

필수인증서류(KS 인증, 단체 표준 인증, KC 안전인증) 각 1부(해당되는 것)

- * ISO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 Q마크획득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업체, 특허 등 있는 경우 제출

원가계산서 1부

연소기 설계도서 1부(A3 도면) 및 부품현황서 1부

- 목표수명 계산서, 목표수명 설정 근거 서류 1부
- * 주요 자재 내구성 설명서를 통해 목표수명 설명 가능(연소실, 청소장치, 연관 등의 내열성, 내부식성, 스크류, 모터류 등 부품의 수명 등)
- 사진 자료 : 본체(전면, 측면, 후면) 및 주요 부품(버너, 점화장치, 연료 공급장치, 청소장치, 제어장치, 실내조절기)
- PCB에 대한 로직정보·샘플 및 제어기 부착 센서에 대한 정보

연소기 설치·운영 요령 1부

연소기 사후관리 계획(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보수 포함) 1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0%) 사본 1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최근 3년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

【붙임 2】

업 체 현 황 서

업 체 명		회사형태	주식회사, 합자회사
소 재 지		연락처	
대 표 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생산형태			
공장면적	㎡	소유관계	(소유) (임차)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주요사업내용	보일러·난로 제조 이외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기재		
전년도 부가세 납부액	<i>보일러·난로 관련 부가세 납부액이 표시되도록 기재 요망</i>		
전년도 주요 실적	<i>보일러·난로 관련 위주로 실적 기재요망</i>		
종 업 원 수			
보일러/난로 제조·설치 관련 자격증소지자현황	(자격증명) (자격증명)	명 명	
특허, 인증 등 보유현황			
“기타 업체 현황에 대한 설명”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 증빙서류 첨부			

주요부품현황서

부품명	생산·판매자 (연락처)	원산지	재질·규격· 모델명	품질·성능
연소실 벽체 (금속부분)	○○ 철강 (042-000-0000)	한국	SUS???	내열강도 ?? 등
버너			금속,주물 등	
연소기청소장치				
연관청소장치				
연료공급스크류				
연료공급 모터				
공기주입 모터				
컨트롤				
실내온도조절기				
점화장치				
역화방지장치1 (정전시 작동)				
역화방지장치2				
.....				

※ 부품현황서는 소비자에게 공개예정이니 품질, 성능, 구동원리 등을 자세히 기재 요망
※ 위에 정한 부품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부품은 업체 자율. 다만, 해당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인 경우 해당 부품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명시

【붙임 4】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 심의 평가서(안)

업체명		연소기 종류		기종명	
-----	--	-----------	--	-----	--

가. 서류평가

필수서류	제출여부	심의결과	비 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미제출)	이상없음	
필수인증서류	(KS, 단체 표준, KC안전)	이상없음	
원가계산	산림청 용역 업체 제출가격	원 원 (적정, 가격조정 필요)	

나. 기술평가

심 의 항 목	배 점	심의위원 점수	비 고
1. 내구성	30		
1) 적정	30		
2) 보통	20		
3) 미흡	10		
2. 사후관리계획	30		
1) 적정	30		
2) 보통	20		
3) 미흡	10		
3. 품질개선노력	20		
1) 적정	20		
2) 보통	10		
3) 미흡	5		
4. 업체의 건실성	20		
1) 적정	20		
2) 보통	10		
3) 미흡	5		
총점	100		
심사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목재펠릿보일러 등록현황

(2024. 1. 1. 기준)

등록번호	업체명	모델명	열출력(난방)	보급가격	비고
2015-2	(주)귀뚜라미	KRP-20PA	24.0kW	5,191,000원	
2017-2	(주)귀뚜라미	KRP-40PA	52kW	4,996,000원	
2017-3	(주)규원테크	K-2DN	22.2kW	3,997,000원	
2017-4	(주)규원테크	K-2DE	22.5kW	5,210,000원	
2018-1	(주)규원테크	K-5DE	50.0kW	6,990,000원	
2019-1	(주)귀뚜라미	KRP-30PA	35.0kW	4,782,000원	

목재펠릿 난로 현황

(2024. 1. 1. 기준)

업체명	모델명	열효율	열출력(점화방식)	보급가격	비고
규원테크	원적외선_25K	92.4%	15.5kW(자동)	2,500천원	가격변동예정
규원테크	KPS-10K	84%	8.5kW(자동)	2,200천원	가격변동예정
태림에너지	TR4200	82%	11kW(스크류버너)	4,200천원	가격변동예정
태림에너지	TR4500	91%	11kW(스크류버너)	4,500천원	가격변동예정
그린에너지솔루션	펠리스타 Noble	87%	8.5kW(자동)	4,000천원	성능개선 中
그린에너지솔루션	펠리스타 Phantom	86%	8.0kW(자동)	3,400천원	성능개선 中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5-2 / '15. 10. 7.

☐ 업체 현황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 등록번호
(주)귀뚜라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24	1588-9000	390-86-01487

☐ 등록 보일러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난방)	정격열출력 (급탕)	연료소비량
KRP-20PA	95.9%	24.0kW	22.0kW	5.3kg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보 일 러	축 열 조	등록계좌
5,191,000 (설치비 포함)	659,000	농협, 1153-01-002238 (주)귀뚜라미

☐ 등록 보일러 사진

전 면	후 면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7-2 / 2017. 2. 27.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귀뚜라미	경상북도 청도읍 월곡2길 34	054-371-9000	390-86-01487

☐ 등록 보일러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난방)	정격열출력 (급탕)	연료소비량
KRP-40PA	87%(고위)	52kW	50kW	11.0kg/h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보 일 러	축열조	등록계좌
4,996,000원 (설치비 포함)	-	농협,1153-01-002238 (주)귀뚜라미

☐ 등록 보일러 사진

	
전 면	후 면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7-3 / 2017. 5. 19.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규원테크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053-856-5900	515-81-39758

☐ 등록 보일러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난방)	정격열출력 (급탕)	연료소비량
K-2DN	80%(고위)	22.2kW	22.6kW	5.1 kg/h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보 일 러	축열조	등록계좌
3,997,000원 (설치비 포함)	-	농협 317-0003-1900-41 (주)규원테크

☐ 등록 보일러 사진

	
전 면	후 면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7-4 / 2017. 12. 5.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규원테크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053-856-5900	515-81-39758	
☐ 등록 보일러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난방)	정격열출력 (급탕)	연료소비량
K-2DE	고위발열량 84.2%	22.5kW	23.6kW	5.34kg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보 일 러		축열조	등록계좌	
5,210,000원 (설치비 포함)		-	농협 317-0003-1900-41 (주)규원테크	
☐ 등록 보일러 사진				
				
전 면		후 면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8-1 / 2018. 3. 27.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규원테크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053-856-5900	515-81-39758

☐ 등록 보일러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난방)	정격열출력 (급탕)	연료소비량
K-5DE	고위발열량 85%	50.0kW <시험결과 57.1kW>	44.2kW <시험결과 53.8kW>	11.7kg/h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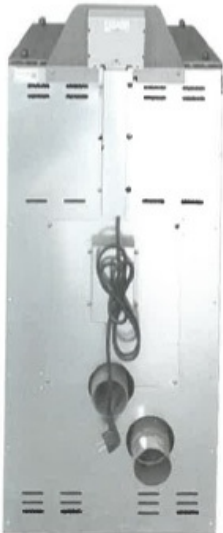
보 일 러	축열조	등록계좌
6,990,000원 (설치비 포함)	-	농협 317-0003-1900-41 (주)규원테크

☐ 등록 보일러 사진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9-1 / 2019. 7. 29.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귀뚜라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054-371-9000	390-86-01487	
☐ 등록 보일러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난방)	정격열출력 (급탕)	연료소비량
KRP-30PA	82%	35.0kW	35.0kW	8.6kg/h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보 일 러	축열조	등록계좌		
4,782,000원 (설치비 포함)	-	농협 1153-01-002238 (주)귀뚜라미		
☐ 등록 보일러 사진				
				
(전 면)		(후 면)		

2020년도 산림청 펠릿난방기 보급사업 등록현황(3)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규원테크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053-856-5900	515-81-39758		
□ 등록 난방기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점화방식	CO가스 감지	단체표준번호
원적외선_25K	92.4%	15.5kW	자동전기점화	적 용	SPS-KFIC-A-001-2082
□ 난방기 가격 / 등록계좌					
제품가격	자부담 / 보조금		등록계좌		
2,500,000원 (설치비포함)	자부담 : 1,450,000원 보조금 : 1,050,000원		농협 317-0003-1900-41 (주)규원테크		
□ 등록 난방기 사진					
					
(전 면)			(후 면)		

2021년도 산림청 펠릿난방기 보급사업 등록현황(1)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규원테크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053-856-5900	515-81-39758	
□ 등록 난방기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점화방식	CO가스 감지	단체표준번호
KPS-10K	84%	8.5kW	자동전기점화	적 용	SPS-KFIC-A-001-2082
□ 난방기 가격 / 등록계좌					
제품가격		자부담 / 보조금		등록계좌	
2,200,000원 (설치비포함)		자부담 : 1,150,000원 보조금 : 1,050,000원		농협 317-0003-1900-41 (주)규원테크	
□ 등록 난방기 사진					
					
(전 면)			(후 면)		

2020년도 산림청 펠릿난방기 보급사업 등록제품 현황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태림에너지	경기 광주시 곤지암 경충대로 330	031-797-9983	233-81-05244

□ 등록 난방기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버너방식	일산화탄소(CO) 가스 감지 장치	단체표준번호
TR4200	82%	11.0kW	스크류버너	적용	SPS-KFIC-A- 001-2082

□ 난방기 가격 / 등록계좌

난방기 가격(설치비포함)	자부담 / 보조금(설치비포함)	등록계좌
4,200,000	자부담 : 3,150,000원 보조금 : 1,050,000원	485-041231-01-017(기업은행) (주)태림에너지

□ 등록 난방기 사진

	
(전 면)	(후 면)

2020년도 산림청 펠릿난방기 보급사업 등록제품 현황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태림에너지	경기 광주시 곤지암 경충대로 330	031-797-9983	233-81-05244

□ 등록 난방기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버너방식	일산화탄소(CO) 가스 감지 장치	단체표준번호
TR4200	91%	11.0kW	스크류버너	적용	SPS-KFIC-A- 001-2082

□ 난방기 가격 / 등록계좌

난방기 가격(설치비포함)	자부담 / 보조금(설치비포함)	등록계좌
4,500,000	자부담 : 3,450,000원 보조금 : 1,050,000원	485-041231-01-017(기업은행) (주)태림에너지

□ 등록 난방기 사진

	
(전 면)	(후 면)

2020년도 산림청 펠릿난방기 지원사업 등록제품 현황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그린에너지 솔루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가마울길 43	031-798-0088	126-86-50771

☐ 등록 난방기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점화방식	일산화탄소(CO) 가스 감지 장치	단체표준번호
펠리스타 Noble	87%	8.5kW	자동 (전기열풍식)	적 용	SPS-KFIC-A- 001-2082

☐ 난방기 가격 / 등록계좌

난방기 가격(설치비포함)	자부담 / 보조금(설치비포함)	등록계좌
400만원	자부담 : 2,950,000원 보조금 : 1,050,000원	농협 351-0883-4156-33

☐ 등록 난방기 사진



(전 면)



(후 면)

2020년도 산림청 펠릿난방기 보급사업 등록제품 현황

□ 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그린에너지 솔루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가마울길 43	031-798-0088	126-86-50771

□ 등록 난방기

모델명	열효율	정격열출력	점화방식	일산화탄소(CO) 가스 감지 장치	단체표준번호
펠리스타 Phantom	86%	8.0kW	자동 (전기열풍식)	적 용	SPS-KFIC-A- 001-2082

□ 난방기 가격 / 등록계좌

난방기 가격(설치비포함)	자부담 / 보조금(설치비포함)	등록계좌
3,400,000원	자부담 : 2,350,000원 보조금 : 1,050,000원	농협 351-0883-4156-33

□ 등록 난방기 사진

	
(전 면)	(후 면)